

배합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(제6조 관련)

구 분	시 설 별	시 설 기 준
1. 양축용 배합사료 (프리믹스 용 배합사료를 포함한다)	가. 공장건물	내화성 건물로서 제품생산에 지장이 없을 것
	나. 저장시설	1) 주원료와 부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추는 것 2) 생산된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추는 것
	다. 분쇄시설	분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
	라. 배합시설	주 배합기와 예비 배합기를 각각 설치하되, 생산능력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설비일 것
	마. 계량시설	각 원료 및 제품을 계량할 수 있는 계량기를 각각 갖추는 것
	바. 정선시설	제조 과정에서 쇄불이와 이물질 제거할 수 있는 제철 및 정선설비를 갖추는 것
	사. 먼지제거시설	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라 갖추는 것
	아. 포장시설	제품 단위별로 봉합할 수 있는 반자동 이상의 봉합설비를 갖추는 것. 다만, 산물만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	자. 수송장치	모든 원료 및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동력 운송장치를 갖추는 것
	차. 작업공장	일관작업(一貫作業)을 할 수 있는 반자동 또는 완전자동 설비일 것
2. 대용유용 배합사료	가. 공장건물 나. 저장시설 다. 배합시설 라. 계량시설 마. 정선시설 바. 먼지제거	양축용 배합사료의 시설기준과 같음

	시설 사. 포장시설	
	아. 분쇄시설	곡물 분쇄설비를 갖추는 것
3. 섬유질 배합사료	가. 공장건물	내화성 건물로서 제품생산에 적합할 것
	나. 저장시설	원료와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추는 것
	다. 혼합시설	원료를 적절히 혼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, 그 공정은 동력에 의할 것
	라. 계량시설	제품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
	마. 포장시설	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
	바. 수송장치	모든 원료 및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동력운송장치를 갖추는 것
4. 그 밖의 동물·어 류용 배 합사료	가. 공장건물	양축용 배합사료의 시설기준과 같음
	나. 저장시설	
	다. 배합시설	
	라. 계량시설	
	마. 정선시설	
	바. 포장시설	
	사. 분쇄시설	분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

※ 비고

- 1) 삭제 <2015.1.2.>
- 2) 양축용 배합사료제조업자가 판매용 프리믹스용 배합사료를 제조할 경우에는 양축용 배합사료제조시설과 구획하여 설치하여야 하고, 저장시설·배합시설·계량시설·정선시설·먼지제거시설·포장시설·수송장치를 따로 갖추어야 한다.
- 3) 배합사료제조업자는 제조공정 또는 포장방법의 특성상 일부 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일부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.